

울산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, 「울산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조례」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8일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

1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

가. 위탁대상시설: 1개소

※ 【붙임 1】 평면도 참고

시설명	위치	연면적 (㎡)	정원	현원	기존 위탁기간	비고
우리두리 어린이집	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273 (서부동)	817.46	53	51	'19.9.1.~'24.8.31	장애아 전문

나. 위탁업무: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

2. 위탁기간: 5년('24. 9. 1. ~ '29. 8. 31.)

3.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

가. 공고기간: '24. 4. 8.(월) ~ 4. 29.(월)

나. 접수기간: '24. 4. 22.(월) ~ 4. 29.(월) 09:00~18:00

※ 토·일요일,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
다. 접수방법: 본인 방문접수(신분증 지참, 우편·인터넷 및 대리접수 불가)

※ 법인, 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

라. 접수장소: 동구청 가족정책과 보육계(1층)

마. 제출서류: 11부(원본 1부, 사본 10부) 위탁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

구분	서류항목	운영체			비고
		법인	단체	개인	
개별사항	·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	○			
	· 등록증,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		○		
	·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의결서 등	○	○		
	· 주민등록등본	○	○	○	법인·단체의 경우,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• 이력서, 자기소개서(법인·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) •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(법인·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장 자격증명서류, 경력증명서, 최종학력증명서, 관련 자격증 등 • 평가인증 관련서류 * 평가인증서 사본 •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(법인·단체의 경우 원장내정자) •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자산현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동산(등기부등본 첨부), 동산(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) -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 증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법인(법인명의 재산), 단체(단체명의 재산), 개인(부부-재산세납부증명서) •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어린이집 자부담 연간 지원실적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•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·연구실적 증빙서 •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부 보육사업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•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상세한 제출서류는 붙임 작성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	

○ 책자는 원본으로 제작하되, 원본 첨부 불가 시 사본 첨부(원본 제시)

※ 주민등록등본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등기부등본 등 즉시발급서류 원본 첨부

※ 해당 자격증, 증명서, 수상 서류 등 원본 첨부 불가 서류는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

4. 사업설명회 개최

가. 일자/장소: '24. 4. 15.(월) 14:00 /가족정책과

나. 참석대상: 사전신청자에 한함

○ 신청기한: '24. 4. 12.(금) 14:00한

○ 접수처: 동구 가족정책과 보육팀 전화접수(☎052-209-3921~5)

다. 주요내용: 위탁시설 개요 및 제출서류 등 설명

5.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가. 신청자격

○ (공통)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능력과 시설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·단체, 개인

○ (법인·단체)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법인(또는 단체)의 본부(또는 지부)를 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·단체,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정관·규약·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

○ (개인)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1조에 규정한 원장자격이 있는 자

- 개인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

나.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제시한 위탁운영 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자

다. 신청 제외대상 ※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최근 5년 이내 보육 관련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
-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
-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·단체
-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6. 위탁운영 조건

- 가. 위탁범위: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
- 나. 운영재원: 정부지원보조금 및 보육료 수입 등 자체수입, 수탁체 지원금
다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
※ 취약보육: 영아, 장애아, 다문화, 시간연장 등
- 라. 시설운영 중 부족분 발생시 위탁운영자는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,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(보육료 등)은 어린이집 운영 외 타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
- 마. 위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
※ 수탁자의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위탁 약정 전에 정리하여야 함.
- 바. 위탁운영자가 법인·단체일 때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
- 사.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관계법령,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, 「울산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조례」 및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시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5조(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) 또는 「울산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조례」 제16조(위탁의 취소) 조항에 의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음
- 아.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운영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구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탁계약 체결시 연간 예산의 10%에 달하는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
- 자.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“국공립어린이집 위·수탁 계약서”에 따르며, 그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우리 구 의견에 따라 결정함
- 차. 「중대재해처벌법」 확대적용('24. 1. 27.)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·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

안전·보건 확보 의무

-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
-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
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7. 위탁기관 선정방법

- 가. '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운영자 심사표' 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
- 나. 위탁운영자 선정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제4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여 선정
- 다. 위원별 평가결과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의 신청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함(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)
- 라. 평가한 결과 동점자가 나올 경우 심사표 항목중 어린이집 운영 계획, 원장의 전문성,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- 마. 신청자 수가 모집위탁체 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재공고 함

8. 선정기준 및 배점 : 운영체의 공신력(10점), 운영체의 운영실적(10점),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(35점), 어린이집 운영계획(40점), 운영체의 재정능력(5점) ※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함

9. 면접심사 개요

- 가. 일 시: '24. 5월 중 ※ 심사대상자에게 개별 통지
- 나. 심사방법
 -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 제안·설명: 10분 이내(시간 엄수)
 -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, 운영의지, 향후 발전계획 포함
 - 심사의원 질의·응답 : 10분 이내(위원 재량)
- 다. 제출서류: 발표자료 1부 ※ 그 외 제출서류 필요 시 별도 통지
 - 제출방법: 전자문서(PPT) 형식으로 이동식저장장치(USB)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(심사 2일 전까지)
 - 분량제한: PPT 슬라이드 20장 이내

라. 발 표 자: 신청자(법인 및 단체는 원장내정자)

○ 신청자는 심사 당일 심의위원회에 출석·발표

○ 법인·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와 원장내정자 모두 참석,
1명이라도 불참 시 포기로 간주

※ 대리참석은 법인·단체 대표자에 한해서 가능, 대리참석자는 직원이어야 함
(대리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)

10. 최종결과 발표: 동구 누리집 공고 및 선정자 개별 통지

가. 심사일로부터 5일 이내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지하고, 개별 통지는 위탁체로 선정된 자에게만 통지

나. 위탁체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울산광역시동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지정된 기한 내 미체결, 결격사유 확인 등 수탁을 포기 하는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

11. 기타사항

가.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접수 이후 열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 할 수 없으며,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
나.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,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

다.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 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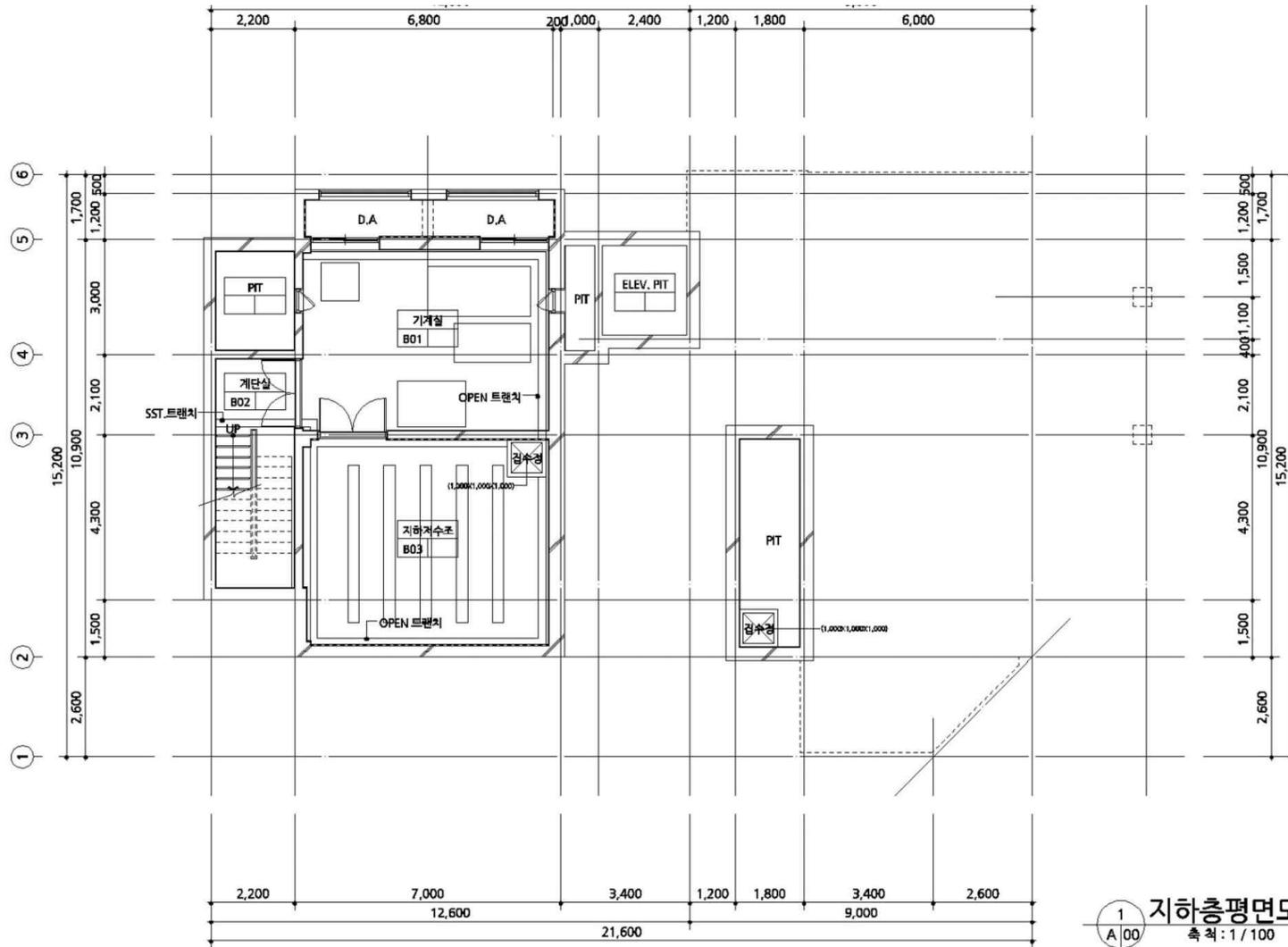
라. 제출서류 중 원본 지참 서류는 원본 미지참 시 사본서류를 인정 하지 않음

마.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관련 법령, 「울산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조례」, 보건복지부 「보육사업 안내」에 따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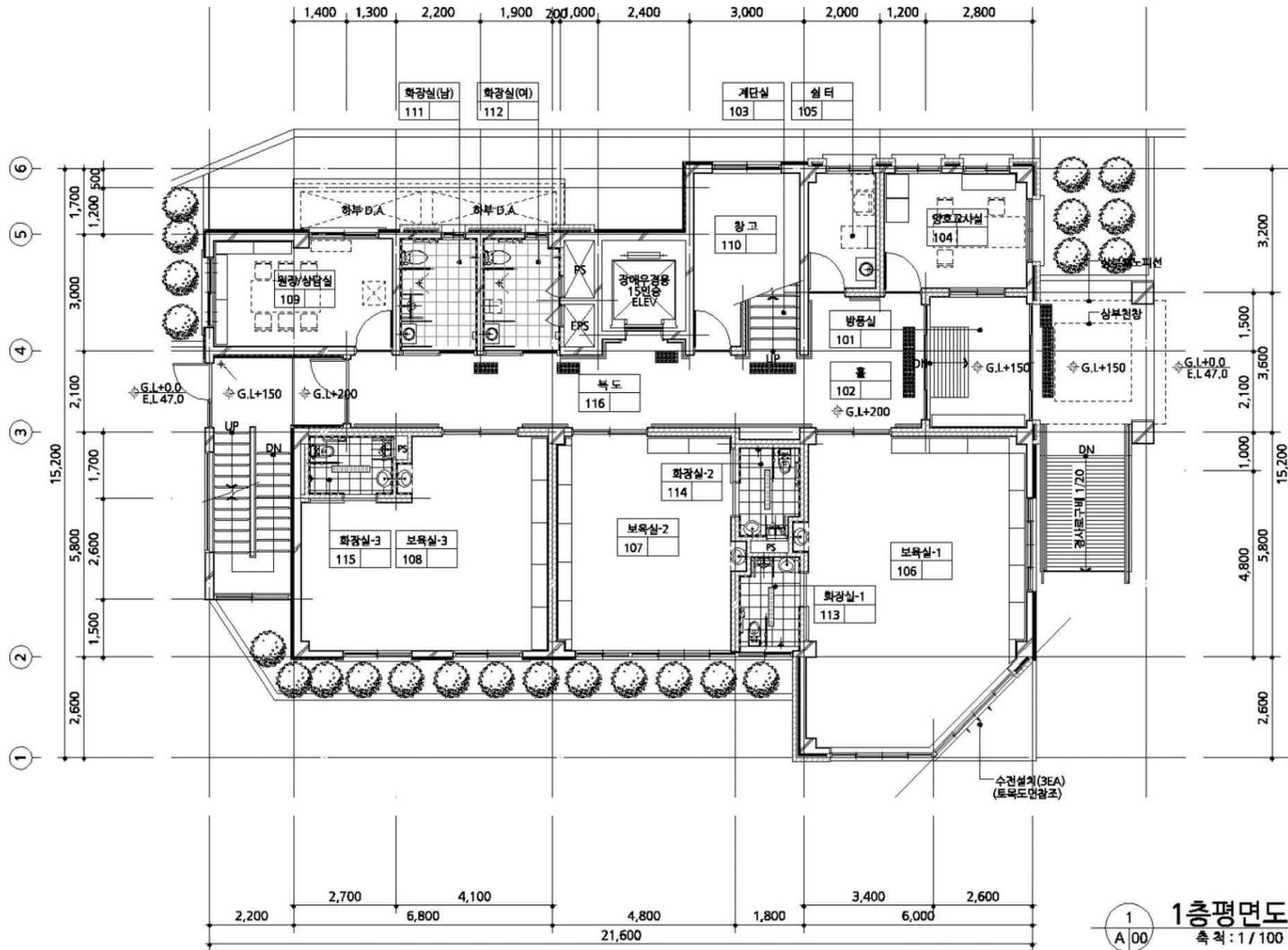
바. 기타문의: 울산광역시 동구 가족정책과 보육팀(☎052-209-3921~5)

【붙임】 평면도(지하층~4층) 1부.

붙임 1-1 지하층 평면도



붙임 1-2 1층 평면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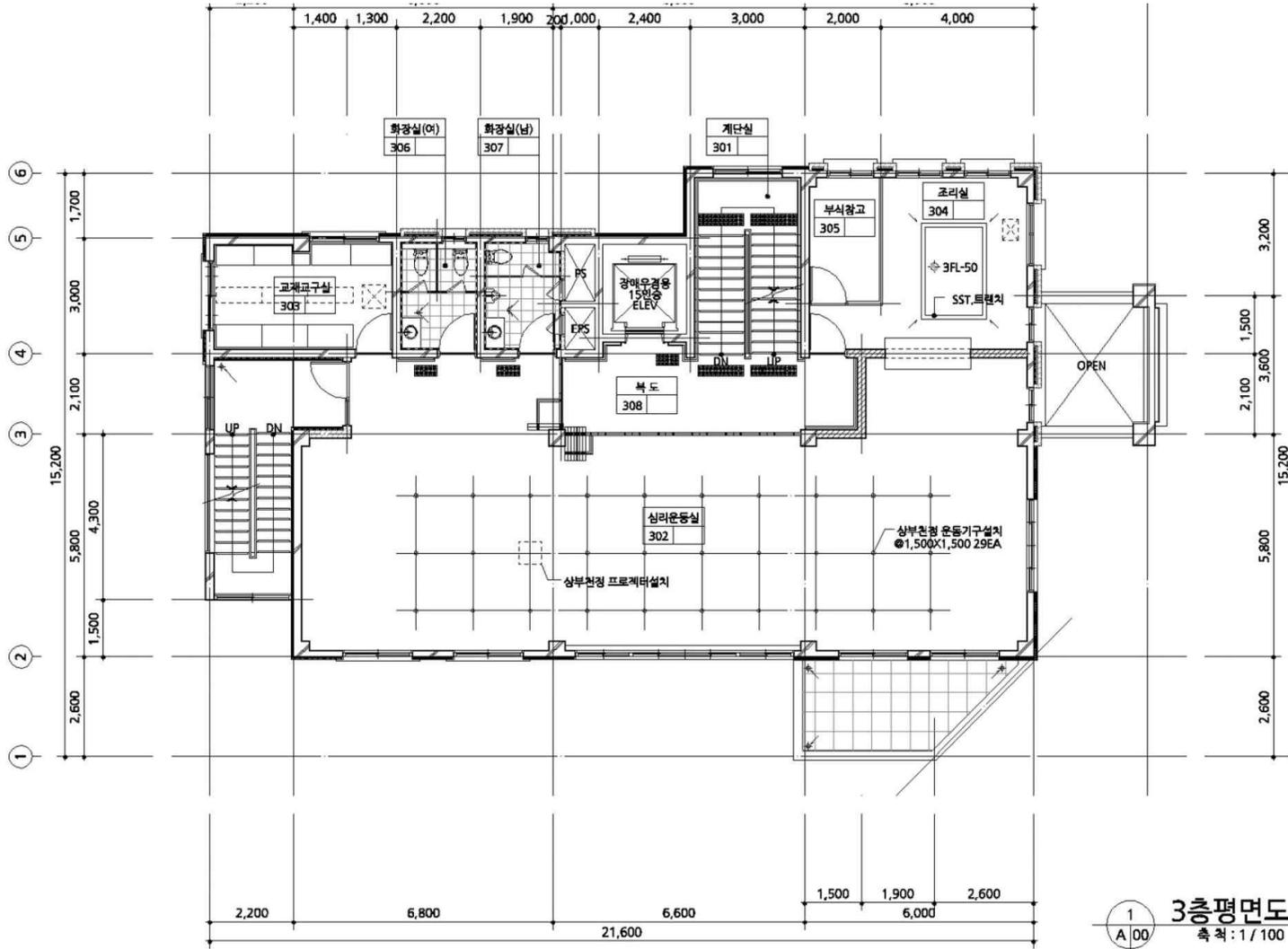
1층 평면도
축척: 1/100

붙임 1-3 2층 평면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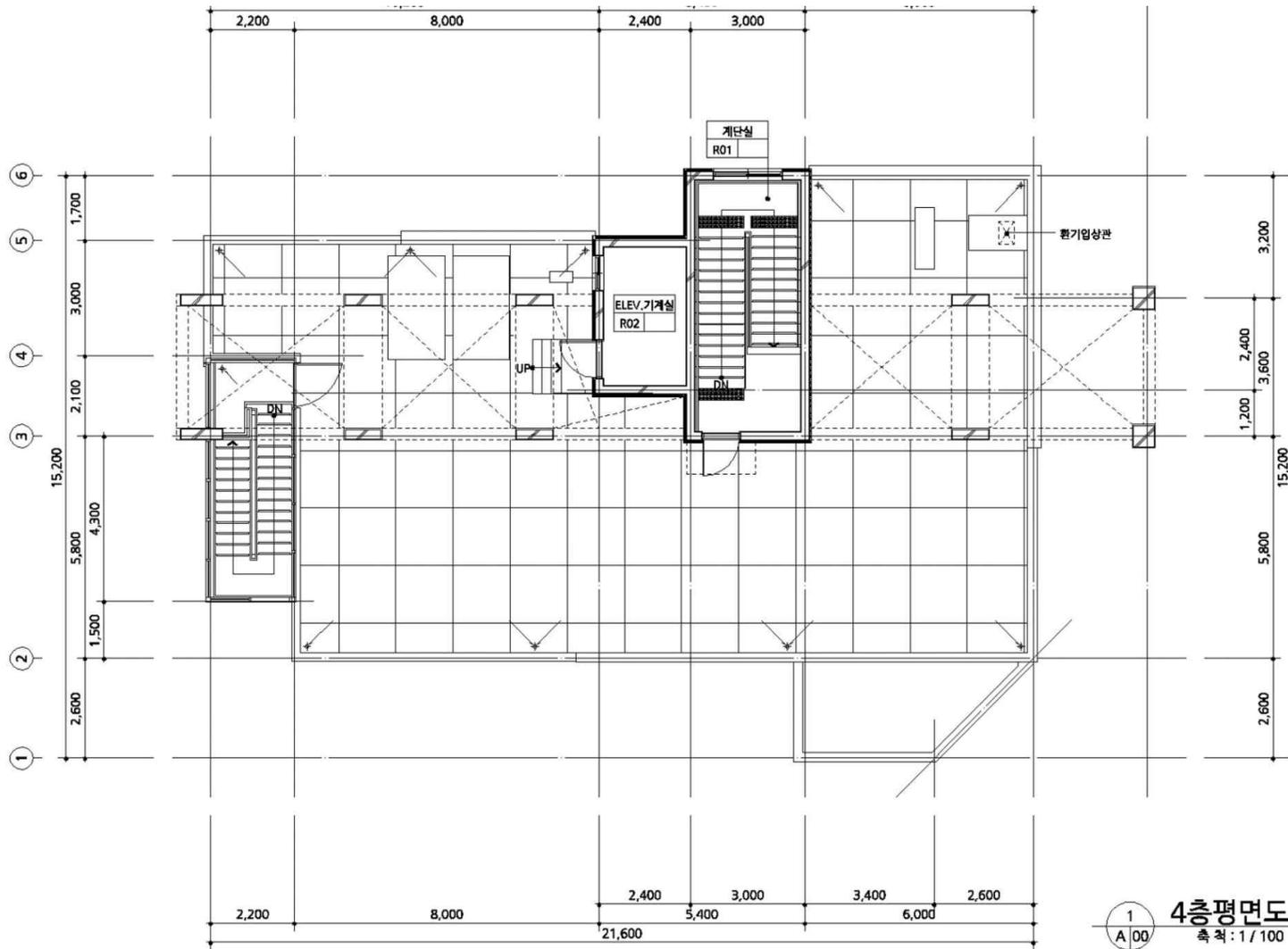
1
A/00 2층 평면도
축척: 1/100

붙임 1-4 3층 평면도



1 3층 평면도
A | 00 축척: 1/100

붙임 1-5 4층 평면도



1
A 00 4층 평면도
축척: 1/100